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상 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상 목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김 완 섭

● 대통령령 제35238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 중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개설·운영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과목의 종류가 5개 이상일 것
-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비용의 지원
 2.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
2. 기상 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3.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면허증의 반납)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 중에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227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을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활용과 관련된 교과목을 5개 이상 개설·운영할 것으로 정하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며, 기상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